

국가안전대진단 급경사지 점검결과 공개 관련 회의

I 추진 개요

- 급경사지 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공개하라는 총리실 지시사항이 있어 **관리기관별 점검 결과 공개(공공·사유)**를 위한 회의 개최
-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포함하여 국무회의 등에 보고 예정으로 대진단시 제출한 점검대상과 통계를 반드시 일치시켜 공개

《 대통령 지시사항 》

국가안전대진단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진단 실명제 및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할 것

- 관리기관(지자체 제외)에서 관리 중인 현황정보와 지자체에서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를 일치시켜 통계 현행화 추진

II 현황과 문제점

□ '급경사지법'에 따른 '관리기관' 현황과 조치할 사항

-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아래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 급경사지법(제2조제5호)에 7개 기관 명시

< 급경사지 관리기관 >

- ①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② 지방산림청(북부, 동부, 중부, 서부, 남부지방산림청)
- 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⑥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서울·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부산교통공사)
- ⑦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의무화(법 제5조제1항, 제2항)
-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급경사지 현황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등록(법 제20조)

- ▷ 인공비탈면(옹벽 및 석축 포함) : 각종 인·허가 등으로 조성한 일반현황(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준공 현황 도면 및 준공사진 등
- ▷ 자연비탈면(산지 포함) : 관리 중인 비탈면의 현황자료(제원, 사진, 지반조사서 등)

-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LH,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개소수와 지자체가 제출한 급경사지 개소수가 상이
⇒ 관리기관별로 공개하되, 현황 불일치 기관은 원인, 대책·대안 제시

< 급경사지 정보 차이 현황 >

급경사지 관리기관	관리기관 개소(A)	지자체 관리 개소(B)	차이 개소(A-B)
한국농어촌공사	26	76	+50
한국토지주택공사	33	295	+262
국립공원관리공단	450	328	△122
지방산림청	23	701	△678
한국철도시설공단	2,267	1,269	+998
도시철도공사	29	29	-

< 시·도별 세부 차이 현황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산림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기관 송부	지자체 관리	기관 송부	지자체 관리	기관 송부	지자체 관리	기관 송부	지자체 관리	기관 송부	지자체 관리	
총계	26	76	33	295	450	328	23	701	2,267	1269	29
서울	0	0	1	31(+30)	23	12(+9)	0	2	8	8	2
부산	0	0	5	1	0	0	2	7	45	23(△22)	0
대구	0	0	0	0	0	0	0	0	10	7(△3)	16
인천	0	0	0	0	0	0	2	2	4	4	2
광주	0	0	3	1(△2)	3	3	1	1	18	10(△8)	8
대전	1	1	2	1(△1)	0	0	0	0	51	48(△3)	1
울산	0	0	2	2	0	0	0	0	167	152(△15)	0
세종	0	0	0	1(+1)	0	0	0	0	24	7(△17)	0
경기	0	2	8	11(+3)	17	18(+1)	2	2	211	25(△186)	0
강원	0	38(+38)	0	31(+31)	198	94(△104)	8	56(+48)	199	195(△4)	0
충북	0	0	0	5(+5)	27	27	0	2(+2)	187	41(△146)	0
충남	7	0(+7)	0	3(+5)	2	2	0	8(+8)	190	46(△144)	0
전북	0	3(+3)	0	12(+12)	27	27	3	70(+67)	62	18(△44)	0
전남	17	19(+2)	3	3	34	34	2	114(+112)	192	233(+41)	0
경북	0	5(+5)	4	14(+10)	54	53(△1)	0	50(+50)	520	71(△449)	0
경남	1	8(+7)	5	179(+174)	59	58(△1)	3	387(+384)	379	381(+2)	0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 관리기관과 지자체 현황 일치 : 대구, 인천, 울산, 제주

○ 관리기관별 현황 설명

- 한국농어촌공사 송부(26개) : 농어촌공사 소유 급경사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송부(33개) : LH소유 주거자산
- 국립공원관리공단(450개) : 국립공원 관리공단 소유
- 지방산림청(23개, 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 한국철도시설공단(2,267개) : 철도관리공단 관리

▷ 급경사지법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간생략)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점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홈페이지 등록 화면 캡처 공문 제출

- 관리기관별로 안전대진단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 화면을 캡처하여 공문으로 제출(~4.25)

⇒ 공개 양식 :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위치, 시설명, 점검일자, 점검결과 포함 요청(안전점검과)

※ 각 관리기관 특성에 맞추어 항목을 추가 공개 가능

III 향후 계획

- 관리기관별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4.25)
- 지자체가 등록한 급경사지통합시스템 D/B자료를 타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상호 대사 및 차이 원인분석 실시(~5월말)
- 급경사지 통합시스템 현황정보 현행화(지자체) 추진(~6월)
 - 누락, 중복, 불분명, 수정 변경 등 보완 추진

참 고

급경사지 관리기관별 현황('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시도	계	안전 대전단	지자체	지방 산림청	한국 농어촌 공사	한국 지택사	국도 철도 시설단	도시 철도 공사	국립 환경관리 공단	기타 (개인, 기업, 공공기관)
총계	14,325	13,758	9059	701	76	295	1269	29	328	2568
서울	821	784	250	2	0	31	8	2	12	516
부산	701	700	306	7	0	1	23	0	0	364
대구	196	155	116	0	0	0	7	16	0	57
인천	248	240	79	2	0	0	4	2	0	161
광주	143	131	57	1	0	1	10	8	3	63
대전	211	211	111	0	1	1	48	1	0	49
울산	389	389	159	0	0	2	152	0	0	76
세종	66	66	52	0	0	1	7	0	0	6
경기	887	882	454	2	2	11	25	0	18	375
강원	2,327	2,288	1841	56	38	31	195	0	94	72
충북	1,283	1,187	936	2	0	5	41	0	27	272
충남	314	312	214	8	0	3	46	0	2	41
전북	1,155	1,081	915	70	3	12	18	0	27	110
전남	1,296	1,247	725	114	19	3	233	0	34	168
경북	1,179	1,170	974	50	5	14	71	0	53	12
경남	3,068	2,874	1829	387	8	179	381	0	58	226
제주	41	41	41	0	0	0	0	0	0	0